#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51 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조경태·조정훈·김성원

강선영 · 조지연 · 박준태

곽규택 • 박대출 • 정성국

권영세 · 김장겸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,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,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배치의무가 없는데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수영장이나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

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,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 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, 제 11조제4항). 법률 제 호

##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3항에"를 "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제3항에"로 한다.

6.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사업자의 조치 등) ① 수	제11조(사업자의 조치 등) ①		
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			
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			
조치를 하여야 한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6.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		
	<u>배치</u>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	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관		
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	리요원의 자격과 제3항에		
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			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			